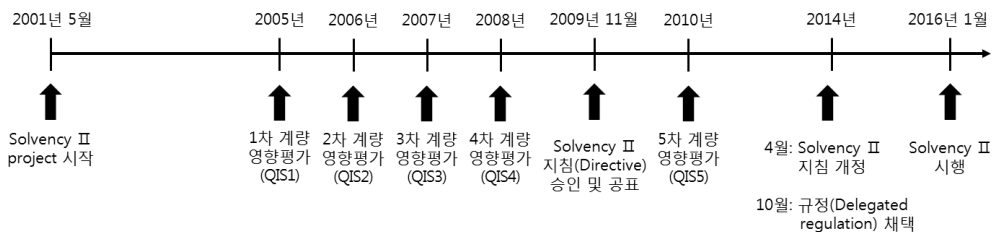


II. EU Solvency II 의 경과조치

1. 도입 배경

- 2016년 1월 EU는 부채시가평가 등을 기반으로 하는 보험회사에 대한 새로운 재무건전성 감독 체계인 Solvency II²⁾를 시행함.
 - 유럽경제구역(EEA)에서 영업 중인 중·대형 보험회사 및 재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EU 차원의 단일 재무건전성 감독 체계임.
 - Solvency II 도입의 주요 목적은 소비자 보호 강화, 감독 선진화, EU 시장 통합, EU 보험회사의 국제 경쟁력 강화 등임.
 - EU는 Solvency II 도입을 위해 2001년부터 준비 작업을 시작하여 수차례 계량영향평가를 거친 이후 2016년 1월부터 시행함(그림 II-1 참고).

그림 II-1 EU Solvency II 도입 경과



2) EU Solvency II의 주요 특징에 대한 세부 내용은 <부록 2> 참조.

■ EU는 새로운 지급여력평가제도(Solvency II)의 연착륙을 위해 수년간 여러 차례 계량영향평가를 수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시행시기 및 방법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함.

-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 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 Authority)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 동안 5차례의 계량영향평가를 실시하여 Solvency II가 보험회사에 미칠 영향을 분석
- 당초 2012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2014년 및 2016년으로 2차례 시행 연기
- 부채평가 할인율을 정할 시 장기선도이자율(UFR; Ultimate Forward Rate) 활용, 변동성조정(VA; Volatility Adjustment) 및 매칭조정(MA; Matching Adjustment)의 금리가산 등을 도입

■ 특히, 2011년 EIOPA에서 실시한 제5차 계량영향평가(QIS 5)에 따르면, Solvency II 도입 시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보험회사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됨.

- SCR 지급여력비율 100% 미만인 보험회사가 14.9%를 차지하였고, MCR 지급여력비율 100% 미만인 보험회사도 4.7%에 달하였음.³⁾

■ 이러한 영향분석을 바탕으로 EU는 2016년 1월 Solvency II 시행 이후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도입함.

- 2014년 4월 경과조치를 추가하도록 지침(Solvency II Directive)을 개정(Omnibus II Directive)하고, 세부규정을 마련함.

3) QIS 5 주요 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은 <부록 3> 참조.

2. 주요 내용 및 효과

- EU Solvency II의 주요 경과조치는 크게 가용자본, 요구자본, 자본요구조건, 보고 및 공시 제출기한 등으로 나눌 수 있음(표 II-1 참고).
- 가용자본 측면에서의 주요 경과조치는 책임준비금의 점진적 반영, 가용자본의 분류 및 인정 범위 완화가 있음.
 - Solvency II 도입으로 인해 증가하는 책임준비금을 경과조치 기간(16년) 동안 점진적으로 반영
 - 책임준비금 금액 또는 책임준비금 산출에 이용되는 무위험이자율을 점진적으로 반영
 - Solvency II 도입 시 강화되는 가용자본의 분류 및 인정 범위를 경과조치 기간(10년) 동안 구제도(Solvency I) 수준으로 완화
- 요구자본 측면에서의 경과조치는 주식리스크, 집중 및 스프레드 리스크의 단계적 반영이 있음.
 - Solvency II 도입 전에 취득한 주식 관련 리스크를 경과조치 기간(7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반영
 - 집중 및 스프레드 리스크를 경과조치 기간(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반영
- 또한, Solvency II 도입 시점에서 구 제도(Solvency I)의 자본요구조건을 만족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새 제도(Solvency II)의 자본요구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유예기간(2년)을 줌.

- 마지막으로 Solvency II 보고 및 공시에 필요한 자료(예, 가용자본 및 요구자본 등)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경과조치 기간(4년) 동안 보고 및 공시 제출기한을 연장하고, 추가 연장 기간을 점진적으로 축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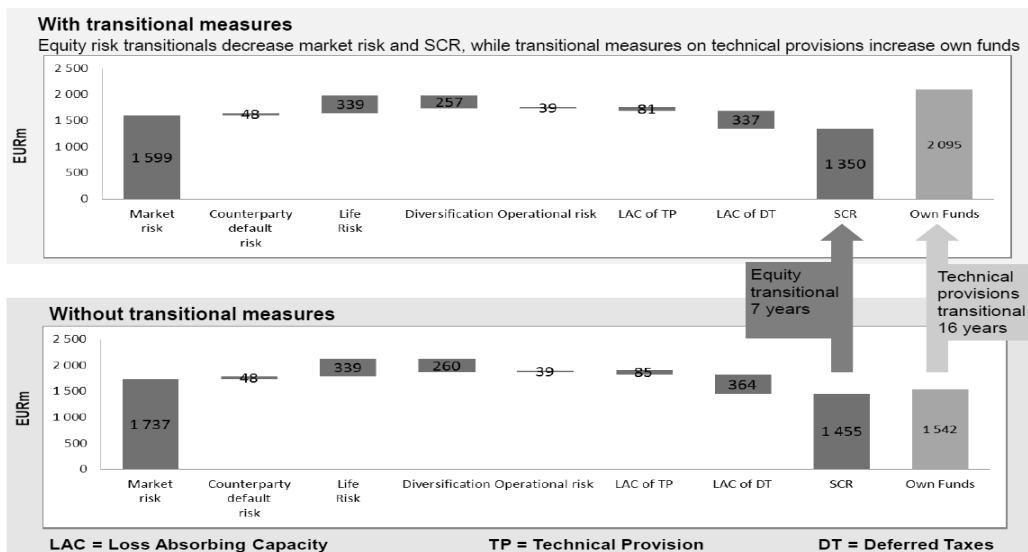
표 II-1 EU Solvency II의 주요 경과조치

경과조치		세부 내용	적용기간
가용자본	책임준비금 책임준비금 금액	Solvency II 도입 전후의 책임준비금 금액 차이를 적용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반영(무위험이자율 경과조치와 동시 적용 불가)	16년간 선형 이행
	무위험 이자율	Solvency II 도입 전후의 무위험이자율 차이를 적용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반영(책임준비금 금액 경과조치와 동시 적용 불가)	16년간 선형 이행
	분류 및 인정	Solvency II 도입 전에 인정한 가용자본을 Solvency II 도입 후에도 인정	10년
요구자본	주식 리스크	Solvency II 도입 전에 취득한 주식 관련 리스크를 적용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반영	7년간 선형 이행
	집중 및 스프레드 리스크	집중 및 스프레드 리스크를 적용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반영	4년간 단계적 이행 2016~17: 100% 면제 2018: 80% 면제 2019: 50% 면제 2020: 조치 완료
자본요구조건		구제도(Solvency I)의 자본요구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Solvency II 최초 적용 시 자본요구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유예기간을 줌	2년
보고 및 공시 제출기한		적용기간 동안 보고 및 공시 제출기한을 연장하고, 추가 연장 기간을 점진적으로 축소함	4년 연간보고: 20주 → 14주 분기보고: 8주 → 5주

■ EU Solvency II 경과 조치 효과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그림 II-2 참고).

- 주식리스크 경과조치를 적용하면 요구자본이 14.55억 유로에서 13.50억 유로로 감소
- 책임준비금 경과조치를 적용하면 가용자본이 15.42억 유로에서 20.95 유로로 증가
- 따라서 경과조치를 적용하면 SCR 지급여력비율이 106%(=15.42/14.55)에서 155%(=20.95/13.50)로 증가

그림 II-2 EU Solvency II 경과조치 효과 예시



자료: Sampo Group(2015).

■ 현재 유럽 상당수의 보험회사가 책임준비금의 점진적 반영 등 지급여력평가에 영향이 큰 경과조치를 각국 금융당국에 신청하여 승인을 얻음.

- 예를 들어, 영국 Aviva Life and Pensions UK Ltd.는 책임준비금에 대한 경과조치를 금융당국에 신청하여 승인받음.